

「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10월 23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9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5년 11월 3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도시안전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가로수 사업 납부기한과 체납처분 절차의 명확화 및 도시숲 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조항을 추가, 상위법의 조항 변경에 따른 연계성 정비 등 조례를 정비하여 도시숲 관리를 극대화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 연계(안 제8조, 제19조, 제24조)
- 맞춤법에 따른 오타자 수정(안 제9조)
-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 위원회 위원 자격 내용 추가(안 제9조)
-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항의 비용부담금의 절차의 명확화(안 제25조)
- 협의회 구성 및 운영(안 제7조 ~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정유진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 「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토보고서 1부.

2. 「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「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
- 제안일자 : 2025. 10. 23.
- 회부일자 : 2025. 10. 29.
- 상정일자 : 2025. 11. 3.

2. 제안이유

- 가로수 사업 납부기한과 체납처분 절차의 명확화 및 도시숲 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조항을 추가, 상위법의 조항 변경에 따른 연계성 정비 등 조례를 정비하여 도시숲 관리를 극대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 연계(안 제8조, 제19조, 제24조)
- 맞춤법에 따른 오타자 수정(안 제9조)
-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 위원회 위원 자격 내용 추가(안 제9조)
-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항의 비용부담금의 절차의 명확화(안 제25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·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 등과 연계되도록 조성·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제3항에서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항을 정비하고,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, 법률에서 위임한 비용 납부 기간을 규정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8조제1항제2호와 안 제19조제1항, 안 제24조제1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인용 조문을 반영하여 정비함.
- 안 제9조제2항에서는 띄어쓰기 자구 정비를 하고, 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, 위원의 자격사항을 추가함.

- 안 제25조에 법령 위임사항에 따라 부담금 징수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, 부담금 징수에 대한 납기일 및 체납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법률 예측성을 강화하여 납부자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으로,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**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**

제12조(가로수의 조성·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·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(이하 “진단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1. 23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·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승인절차,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4. 1. 23.>

1.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
2. 가로수의 옮겨심기
3. 가로수의 제거
4. 가로수의 가지치기
5.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·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12. 20.>

⑤ 「도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·유지하여야 하며,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. 23., 2024. 12. 20.>

⑥ 가로수의 조성·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, 진단조사의 방법·대상·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4. 1. 23., 2024. 12. 20.>

제13조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) ①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 중 도,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2. 27., 2024. 1. 23.>

1.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
4.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
5.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4. 1. 2.>

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,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. <개정 2024. 1. 2.>

1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2.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
3.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4.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
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9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0. 23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가로수 사업 납부기한과 체납처분 절차의 명확화 및 도시숲 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조항을 추가, 상위법의 조항변경에 따른 연계성 정비 등 조례를 정비 하여 도시숲 관리를 극대화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 연계(조례안 제8조, 제19조, 제24조)
- 나. 맞춤법에 따른 오타자 수정(조례안 제9조)
- 다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 위원회 위원 자격 내용 추가(조례안 제9조)
- 라.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항의 비용부담금의 절차의 명확화(조례안 제2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합의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5. 9. 8. ~ 9. 29.) 결과, 제출된 의견 없음
 - 평창군 공고 제2025-1338호, 산림과-18034(2025. 9. 30.)호
- 2) 규제심사 : 비규제 대상[기획예산과-13777(2025. 9. 3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[기획예산과-13777(2025. 9. 3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없음[가족복지과-32482(2025. 9. 1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5713(2025. 10. 13.)호]

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중 “**법 제12조제2항**”을 “**법 제12조제3항**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각 각**”을 “**각각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법 제12조제2항**”을 “**법 제12조제3항**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법 제12조제2항**”을 “**법 제12조제3항**”으로 한다.

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5조(부담금의 징수) 제24조에 따른 비용부담금은 납부고지서 발부일 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,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도시숲 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승인사항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도시숲 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승인사항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<u>각각</u>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<u>각각</u>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<신 설>

제19조(조성협의 등)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4조(비용부담) ① 군수 외의 자(이하 “원인자”라 한다)가 가로수를 식재·이식·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6.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
제19조(조성협의 등)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비용부담) ① 군수 외의 자(이하 “원인자”라 한다)가 가로수를 식재·이식·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·③·④·⑤·⑥·⑦·⑧(생략)
제25조(부담금의 강제징수) 군수
는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을
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
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
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
다.

②·③·④·⑤·⑥·⑦·⑧(현행과 같음)
제25조(부담금의 징수) 제24조에
따른 비용부담금은 납부고지
서 발부일부터 30일 이내 납
부하여야 하며, 기한 내 부담
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
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
여 징수할 수 있다.

관계법령 발췌
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약칭: 도시숲법)

[시행 2025. 6. 21.] [법률 제20581호, 2024. 12. 20., 타법개정]

제12조(가로수의 조성·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·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(이하 “진단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1. 23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·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승인절차,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4. 1. 23.>

1.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

2. 가로수의 옮겨심기

3. 가로수의 제거

4. 가로수의 가지치기

5.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·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12. 20.>

⑤ 「도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·유지하여야 하며,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. 23., 2024. 12. 20.>

⑥ 가로수의 조성·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, 진단조사의 방법·대상·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4. 1. 23., 2024. 12. 20.>

제13조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) ①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 중 도,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2. 27., 2024. 1. 23.>

1.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3.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

4.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

5.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4. 1. 2.>

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,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. <개정 2024. 1. 2.>

1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2.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

3.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4.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
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안전국 산림과장 이주하
연락처	(033) 330 - 2450